#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연법령 개정 연구

2020년 4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연법령 개정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진

- \* 연구책임자 남기연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 공동연구원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박정인 소장(해인예술법연구소)
- \* 연구보조원 황예진 연구원(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 목 차

Ι.	공연안전지원센터 신설	·· 1
Π.	사고보고의무 등 신설	5
Ш.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신설	13
IV.	안전관리조직 개정	20
V.	안전교육 개정	23
VI.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8
VII.	공연장의 시설기준 개정	32
VIII.	공연장등록신청서 등 개정	36
IX.	안전진단기관	38

#### I. 공연안전지원센터 신설(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 내용

#### 법 제10조의2(공연안전지원센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 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 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조의2(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1.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업무책임자 : 공연 안전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업무책임자 외 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연 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 단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 2. 공연장 및 공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3. 안전검사 등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 4. 공연장 안전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 5.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 6. 법 제12조의5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 1. 제정 취지

-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 안전제도 운영을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안전 관련 분야의 진단기관은 존재하나 공연장, 공연 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 (문제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공연장 안전 제도 운영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안정적 예산 확보 등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명문화를 통하여 동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동 법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에 따른 설계검토 등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함.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지정 및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동 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2. 해설

#### (1)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은 동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동 법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에 따른 설계검토 등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공연안전지원센터)으로 지정할 수 있음
- <u>동 법 시행령 제8조의2(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u>를 신설하여 여기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특히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을 위해서는 동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계 의 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u>동 법 시행령 제8조의2(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u>의 신설을 통하여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받는 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등) 으로 명시하여 그 지정 범위와 기능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 「스포츠산업진흥법」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서는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발전을 위해 특정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지정요건의 구조 및법적 근거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전체 구조를 참조하였음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바, 센터의 지정 및 설치를 주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지정의 범위 및 지정요건 등을 상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이 명시한 내용은 이와 유사한 입법구조에 해당함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난립방지 및 과도한 영리활동으로 치우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될 우려를 고려하여 일정한 전문인력의 수, 사무실 및 기자재 등 구비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음
- 전문인력의 확보 기준,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 보유 요건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함으로써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였음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행정정보의 공개를 명시함

#### (2)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

- <u>동 법 제10조의2(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등)</u>이 위임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에 있어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보급,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기술지원, <u>동 법 제12조의5(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u>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열거된업무 외에도 공연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
- <u>동 법 시행령 제8조의2(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u>로 정하는 공연안전 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공연장 및 공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공연장 안전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동 법 제12조의5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의미함

#### Ⅱ. 사고보고의무 등 신설(법 제11조의6, 시행령 제9조의5, 시행규칙 제6조의14)

#### 내용

#### 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 ①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 제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1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자
- 3. 제3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 시행령 제9조의5(중대한 사고의 범위)

- ① 법 제11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공연과 관련하여 사 상이나 물자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 다.
- 1. 화재, 낙하, 추락, 무대기계·기구의 고장 등으로 공연을 중지시킨 사고
- 2. 사망자의 발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요청한 사고
- 5. 기타 전 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② 법 제11조의6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등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6조의14(사고보고의 내용)

- ①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6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시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3. 사고 발생 경위
- 4.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등
-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전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3호의12의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제정 취지

- (현황) 동 법은 공연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동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동 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의 안전관리비의 계상, 동 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동 법 제11조의4(안전교육)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동 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이와 같은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화는 공연장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대처방안에 불과하고,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u>동 법 시행령 제9조의5(중대한 사고의 범위)</u>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범위에 포섭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보고를 하도록 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연장 운영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 해설

#### (1) 사고보고의무

○ 동 법은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어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통한 사후대처방안 및 정책 수립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 장운영자등에게 <u>동 법 시행령 제9조의5(중대한 사고의 범위)</u>에서 정하는 중대 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하도록 신설함

- 보고의무자는 동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며, 보고의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명확히 함. 보고의무의 내용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상자 등 피해 상황, 사고 발생 경위,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법」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에서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관할 지자체 장에게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관광진흥법」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또한 사고발생 시 현장 조치 후,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중대한 사고의 범위

동 법 시행령 제9조의5(중대한 사고의 범위)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공연과 관 련하여 사상이나 물자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고를 의미함

① 화재, 낙하, 추락, 무대기계·기구의 고장 등으로 공연을 중지시킨 사고

공연장안전사고사례집에 의하면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화재, 낙하, 추락, 무대기계·기구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공연장안전사고사례집 총 102건의 공연장 안전사고 중 화재 19건, 낙하 13건, 추락 9건, 무대기계·기구의 고장 14건 등으로 조사됨

② 사망자의 발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 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항공·철조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는 조사가 필요한 철도사고를 철도 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요청한 사고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더라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에 의해 사고보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연 관련 사고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⑤ 기타 전 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위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도 이에 준하는 공연장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를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연 관련 안전사고의 정보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적절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3) 자료제출 및 자료보관

- <u>동 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2항</u>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동 법 시행령 제9조의5(중대한 사고의 범위) 제2항</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공연자운영자등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자료의 보관의무자는 "공연장운영자등"으로 하고, <u>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14(사고보고의 내용) 제1항</u>의 내용을 <u>별지 제13호의12</u>의 서식을 통해 작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사고보고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동 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2항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3년마다 정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14(사고보고의 내용) 제1항 별지 제13호의12 서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를 안전진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사고조사보고서 ([별지 제13호의12서식] 신설)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2서식]

## 사고조사 보고서

공연장명				등록번호			
주소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장소	년 월 일 ] 무대 (상세 장소 : ] 백스테이지 (상세 장: ] 기타 (상세 장소 :				
사고발생경위				및 불안전한 행동(예시: 보호구 미착용, 넘어짐 등) 등 성	날세		
		인원 (명)		피해현황 (비고 참조)			
	인적						
	인석 피해						
피해		※ 인적피해 상황 기재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II.	디해물품	피해금액 (단위 : 천원)			
	물적						
	_ · 피해						
수습 현황 및 복구 계획		보고 시점까지 나	내부보고 등 조치와 수습	·현황 및 향후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첨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별첨							
			위와 같이 제출합 ( 년 월	합니다. ! 일)			
		운	영자	(서명 또는 인)			

#### 비고

- 1) 필요한 경우 상해유형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태
  - ② 탈구: 뼈마디가 삐어 어긋난 상태
  - ③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
  - ④ 찔림 : 칼, 주사기 등에 찔린 상처
  - ⑤ 좌상 : 받치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피하조직이나 내장이 손상된 상태
  - ⑥ 베임 :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
  - ① 이물 :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체내에 발생하여 조직과 익숙해지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있는 상태
  - ⑧ 난청 : 청각기관의 장애로 청력이 약해지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
  - ⑨ 화상 :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⑩ 동상 : 심한 추위로 피부가 얼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⑪ 전기상 : 감전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⑫ 부식 : 알칼리류, 산류, 금속 염류 따위의 부식독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
- ⑬ 중독 : 음식이나 내용·외용 약물 및 유해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 태
- (4) 질식 : 생체 또는 그 조직에서 갖가지 이유로 산소의 결핍,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 ⑤ 감염 :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상태
  - ⑩ 물림 : 짐승, 독사 등에 물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
  - ⑪ 긁힘 : 동물에 긁혀서 생긴 상처
  - ⑱ 염좌 :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생긴 손상
  - ⑲ 절단 : 예리한 도구 등으로 인하여 잘린 상처
  - 20 그 밖의 유형: ① ~ ⑩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해의 명칭을 기재할 것
- 2)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상에 표기된 상해 질병 코드(질병분류기호 등)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4) 금지행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 와 관련하여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 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 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동 법 제 41조 벌칙조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여 사 고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3항의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감염병과 같은 특수상황과 공연장에서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특수 상황은 유사점이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진실한 자료제출을 독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
- 공연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라도 안전한 공연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되므로 자료제출의 금지행위와 관련하 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 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Ⅲ.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신설**(법 제12조의5, 시행규칙 제6조의15)

#### 내용

#### 법 제12조의5(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 3.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 4.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5.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현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1. 공연장 명칭 및 소재지
- 2. 안전진단실시 기관 및 기간
- 3. 안전진단 결과와 유효기간
- 4. 그 밖에 공연장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 운영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교육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시행규칙 제6조의15(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정보)

법 제12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6조에 따른 공연장의 변경등록 사항
- 2. 제6조의2에 따른 공연장의 폐업에 관한 정보
- 3. 제6조의3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 안내에 관한 정보

#### 1. 제정 취지

- (현황) 행정안전부의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18.11.07)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공개를 위한 방법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문제점)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제공되지 않고 있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공연장에 대한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동 법 제12조의5(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신설함

#### 2. 해설

#### (1) 공연장안전정보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공연장 안전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함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호로 정한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연장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①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 ② 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③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한다.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 ④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포함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 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⑤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현황

동 법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현황 파악에 있어 편리성을 도모함

#### (2) 무대시설 안전진단 공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그와 관련 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공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① 공연장 명칭 및 소재지
- ② 안전진단실시 기관 및 기간
- ③ 안전진단 결과와 유효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명칭 및 소재지,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안전점검의 결과 등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5에 따른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 ④ 그 밖에 공연장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도 공연장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 법 제6조의15(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정 보)의 각 호를 의미함

- ①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연장의 변경등록 사항
- ②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공연장의 폐업에 관한 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③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 안내에 관한 정보

피난 안내와 관한 사항으로는 피난안내도, 공연장 안내원 배치도 등이 있으며 이는 소방안전 검사 시 활용 가능함

#### (3) 안전진단 결과 공개 방법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 단은 합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안 전진단의 개괄적인 결과를 전용 안전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진단 결과 공개 범위 협의('18년 제4차 공연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전체를 공개하는 것보다 요약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양호, 수리필요, 이용제한필요, 사용중지필요와 같은 등급 으로 분류하고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진단의 경우 합격, 불합격으로 분류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구분	유사 제도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방법
1	케오시셔 아저저거	등급으로 분류
'	체육시설 안전점검	양호, 수리필요, 이용제한필요, 사용중지필요
2	시성무이 아저저거 미 저미아저지다	등급으로 분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0	스카기티션 저기거니	합격/조건부합격/불합격으로 분류
3	승강기시설 정기검사	조건부합격, 불합격의 경우 세부내역 확인 가능
4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진단	합격/불합격으로 분류
		유원시설의 유기기구별
5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적합(정상)/부적합으로 분류
		부적합한 경우 해당 유기기구만 재검사 실시

#### (3) 자료 제출 또는 등록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교육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정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등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에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 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Ⅳ. 안전관리조직 개정(시행령 제9조의3)

#### 가. 안전관리조직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좌동) ②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 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 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다 음 각 호의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조 치에 관한 사항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일정 관리 및 결과 조 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 개정 취지

- (현황) 현재 동 법에서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로 구성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음
- (문제점) 공연장운영자등이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해대처 등 안전에 관하여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나 단순히 인적사항과 업무수행내용만 보관하라는 동 법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제2항의 현행 규정으로는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기록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 규정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선방안) 단순히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공연

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 하고자 <u>동 법</u>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제2항에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규정함

#### 2. 해설

####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원 및 업무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원은 공연장운영자등,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임.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①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③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조치 ④ 무대 시설 안전진단 일정 관리 및 결과 조치 ⑤ 그밖에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리라 고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 등을 관리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조직 선임요건 명확화

- 동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요건이나 위계를 확실히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법령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 니고 실무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 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선임요건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두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중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 안전과 관련한 직무 선호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공연업계를 위협할 수 있음
- 향후 무자격자나 근로계약상 선임요건이나 위계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는 사회문

제가 대두하였을 때 입법을 검토하여도 늦지 않음

#### 나. 과태료

현행	개정안
법 제43조(과태료) ③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 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4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4. 제11조의6 제1항의 사고보고를 하지 않게 제2항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자

#### 1. 개정 취지

- (현황) 동 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동 법 제11조의4(안전교육), 동 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없음
- (개선방안)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관련 의무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해설

○ 기존의 규정인 제4조 제3항 위반한 자 이외에도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3. 제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4. 제11조의6 제1항의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의 제출을 거부한 자와 관련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V. 안전교육 개정(시행령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된 공연자안전교육계획에 따른 시기 및 교육시간

#### 1. 개정 취지

- (현황) 동 법 제11조의4(안전교육)에서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 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에게 동 법 시행령 제 9조의4(안전교육)에 따라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공연자를 대상으로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획일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연장운 영자등과 공연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 (개선방안) 공연자 안전교육의 실효성 및 효과 재고를 위해 <u>동 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제1항 제1호</u>에서 규정하는 공연자의 안전교육 시기와 교육시간을 <u>별지 제16호서식</u> 재해대처계획서의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함

#### 2. 해설

#### (1) 안전교육

○ 안전사고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하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 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공연자 안전교육

- 공연장운영자등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한 뒤 대상자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는 바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획일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이므로 각 공연장의 상황에 맞게 공연장운영자등이 계획한 재해대처계획에 공연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자 함
- 공연자의 경우 해당 공연장에서 매번 공연을 한 유경험자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에 따라 때에 따라 면제할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재 량권을 둘 수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제10조(안전교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 며, 경우에 따라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 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역시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규정한 뒤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대리교육도 인정하고 있으며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 교육으로 나누고 4시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자에게 공연 대회 1시간 이상 등 교육을 실시하는 현행 규정보다는 변경 내용이 없으면 기존에 안전교육 수료를 인정해주는 재해대처계획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

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소 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와 같이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 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안전교육 유효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주는 방식도 고 러할 필요가 있음

####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교 육 구 분	교 육 내 용	교 육 시 간
	수상안전 수칙	
기. 수상형 체험활동	관련 법령 등	  6시간
/ 7 7 8 8 세월월 8	응급처치	10시선
	인명구조	
	수중안전 수칙	
나. 수중형 체험활동	관련 법령 등	  6시간
다. 구궁형 제임될당	응급처치	10시선
	인명구조	
	관련 법령 등	
다. 일반형 체험활동	응급처치술	4시간
	인명구조	

비고

- 1.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2. 안전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 이직 등으로 연안체험활동에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종사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첨부서류 개정)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 ]신고 [ ]공연 대해대처계획 [ ]변경신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	수일					처리 기간	- 스시				
	③ 운 양 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	화번호:				)		
①120 인정안 120		명칭			종 오	i, 혖배 —	]공공 공연장	여		]수탁	[]양		
							]민간 공연장	[ ]지	<sub>「</sub> フト [ ]	]임차			
장		소재지				(전	화번호:	1			)		
영	<b>(4</b> )	착공일				개	관일						
작 성	◈개영하	시설설치 내역	건축면적	n	m²( 평)	무디 (무대지	내면적 데공면적)		m²(	평)			
사 항	상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무대기계		구동식		:	개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 기구수		고정식		:	개					
					떠다 단을 거세/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	는 바닥면적		m	n²( 평
		등록번호		<u></u>	록연월일								
	⑤ 주 최	대표자성명		실	병년월일								
2	· 최 자	대표자주소											
공 연		제명			공연단 (출연 및	! 규모 제작인원)							
시 작		공연기간			매표	방법							
성	연 년 년		무대설치면	무대설치면적			평) / 설치완	료일 :					
사 항	연	공연에 따른 시설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추가 설치수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	치수 ====	개	총 좌석수(	관람예상인원	)			개		
	① 변경 전												
Y	사항 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변경 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												
Ā	털부서 <del>-</del>	류 뒤쪽 참조									수료 성음		
							_						

수수료

없음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여자 유역자 고여시서이나 자신 유역자 및 고여주치자는 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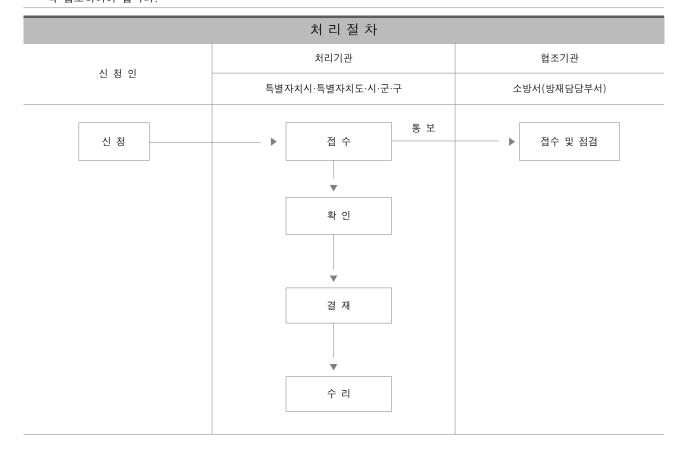
-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u>1천명</u> 이상의 관람 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5.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등)
- 6.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 7.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조직 법정 안전교육 및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포함)

#### 유의 사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Ⅵ.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시행령 제24조의)

			과태료 금	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 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법 제 43조 제3항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b>(정합)</b>	
나.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 여 운영한 경우	법 제 43조 제2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u>1,000만</u> <u>원</u> 상향조정 필요 <b>(부정합)</b>	
다. 법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 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 43조 제1항 제1호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 <u>2,000만</u> <u>원</u> 상향조정 필요 <b>(부정합)</b>	
라.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 43조 제1항 제2호	3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 <u>2,000만</u> 원 상향조정 필요 <b>(부정합)</b>	
마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 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경 우	법 제 43조 제2항 제1호 의2	(해당 금	하지 않은 액이 1천 <sup>5</sup> - 1천만원	만원을 초과	
바. 법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 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 43조 제2항 제1호 의2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3			
사. 법 제11조의5 제1항을 위반하 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	법 제 43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b>(정합)</b>	

거나 또는 피난 안내에 관한 사 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4항 제1호			
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 43조 제2항 제2호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 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 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 <u>1,000만</u> <u>원</u> 상향조정 필요 <b>(부정합)</b>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00만 원 상향조정 필요 ( <b>부정합</b> )
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 43조 제2항 제3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u>1,000만</u> 원 상향조정 필요 <b>(부정합)</b>
차.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 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 43조 제4항 제2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u>300만원</u> 상향조정 필요 <b>(부정합)</b>
카.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 선전물의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 43조 제2항 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u>1,000만</u> 원 상향조정 필요 <b>(부정합)</b>

#### 1. 개정 취지

- (현황) 동 법에 명확히 과태료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에서는 3차 이상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입법 검토에따라 시정요구가 있고 관련 규정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됨
- (문제점)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으로 동 법상 각 의무에 대해 이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계 정당성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요구됨. 동 법에 과태료 상 한선을 둔 것은 유사 입법과의 형평성과 법적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부과기준에서 이에 부합되지 못하는 기준을 별 도로 제시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과태료의 세부 기준 정비 필요함
- (개선방안) 과태료 부과는 헌법에 위반 여부(헌법의 개개 규정의 위반 여부는 물론 헌법상 기본원리와 주요 원칙의 위반 여부도 포함), 법률 위반여부(위임입법 법리인 법률유보,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정당성의원칙) 등에서 검토되어야 함. 동 법 제43조(과태료)에서 과태료 상한선을 명확히 두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하위 입법을 통해 법이 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위임입법을 남용한 행정행위의 일탈이라고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 개정을 통하여 입법상 정합성을 맞추고자 함

#### 2. 해설

#### (1) 동 법 제43조 제1항 위임입법 일탈

- 동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항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 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동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동 법 제 43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
- 헌법의 기본원리는 입법과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헌법적 요청이며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있음. 동일 규범 내에 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 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

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 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됨

#### (헌법 재판소 2005.6.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결정)

#### (2) 동 법 제43조 제2항 위임입법 일탈

- 동 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동 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동 법 제32조(폐기명령 등)를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 선전물의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동 법 제43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함
- 입법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당성으로 법률의 내용이 법리적 측면, 사회구성원의 사고나 인식 그리고 사물의 이치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아야하므로 법률의 내용이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이를 발견하는 국민은 법률로 성립되어 시행되고 있더라도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통일성원칙에 따라 부정합한 기준은 상향조정하여 위임입법 일탈의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성립시켜야 할 것임

#### (3) 동 법 제 43조 제3항 위임입법 일탈

- 동 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공연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함
- 공연법이라는 같은 법 내에서 법률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도록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할 경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됨

#### Ⅶ. 공연장의 시설기준 개정(시행규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 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 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 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① (좌동)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방화막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이 없는 공연장은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b>시행규칙 부칙</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u> 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 취지

- (현황) 구동 무대기계·기구수 20개 이상인 중·대규모 공연장 중 비교적 관리가 양호한 방화막의 비율은 19%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중·대규모 공연장은 방화막이 없거나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2015년 민병주 의원의 발의로 공연장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내 기술 기반의 부족에 따른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의 우려로 입법화되지 못한 선례가 있음
- (문제점) 공연장은 불꽃, 조명 등이 발화원과 천 재질의 막, 목재, 인화성 세트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고,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더욱 클 수 있음(사례: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망 53명, 부상 76명). 공연장의 시설기준을 무대시설 및 방음시설로만 국한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의 경우 미흡한 상황이 지속됨

○ (개선방안) 공연장에 방화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무대에서 객석으로 단시간 내 불이 번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관객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사례: 2007년 예술의 전당 화재, 무대시설 전소 피해액 194억원, 인명피해 없음). 또한 화재 발생 시인명 사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연기(유해가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방화막의 유무에 따른 효용의 차이점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상태임. 이에따라 동법 제9조 제1항은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 및 방음시설(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이에 더나아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방화막의 설치를 추가하여 공연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2. 해설

#### (1) 설치 대상

- 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방화막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 경우 방화막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도록 정하였음
-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주요국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호주, 중 국이 있음

-		
국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독일	무대의 크기가 200㎡ 이상이거나 하부무대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린	그리드 높이가 2.5m 이상인 공연장	
오스트리아	무대시설을 갖춘 전용 공연장	
미국	프로시니엄 공연장	
ェス	무대와 백스테이지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상부	
호주	무대시설(그리드)가 있는 공연장	
중국	800석 이상 공연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제도 개선방안 연구자료집」, 2020. 1. 9.)

#### (2) 설치 기준

- 공연장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의 경우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 항은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 규 정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임입법 내용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방법에 해당함
- 방화막 설치는 공연장 화재로 인한 관객 피해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한 공연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는 화염과 유해가스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방화막의 효용가치는 이미 검증된 상황임

#### (3) 단서 규정

- 방화막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이 없는 공연장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통하여 규칙 시행일 기준 공연장 시설 현황을 고려하였음(절충적 접근으로, 향후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공연 안전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여 단계적 상향 개선 타당)
- 공연장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연장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 방지 필요성에 따른 것임

#### (4) 부칙

○ 공연장 무대시설 설계검토부터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8개 공연장 대상 평균 2년 4개월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u>동 법 시행규칙 부칙</u>은 공포 후 3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순번	공연장명	소재지	설계검토 시작 시기	공연장 등록 시기	소요기간 (개월)
1	SK아트리움	경기 수원	13.07.	14.01	6
2	국립무형유산원	전북 전주	12.11	13.04	6
3	밀양문화예술회관	경남 밀양	13.02	16.08	42

4	여수예울마루	전남 여수	11.09	12.05	9
5	대학로 뮤지컬극장	서울 종로	11.01	13.07	30
6	익산복합문화센터	전북 익산	12.04	15.04	37
7	인천중구문화회관	인천 중구	11.06	12.09	15
8	아시아문화전당	전남 광주	09.08	15.09	77
	평 균				28 (2년 4개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0. 4. 20.)

## Ⅷ. 공연장등록신청서 등 개정(시행규칙 제6조)

현행	개정안
지행규칙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 ①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서류에 한한다.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나. 변경등록:법 제12조 제2항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해당한다)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 ① 좌동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나. 변경등록: 변경된 구동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

## 1. 개정 취지

- (현황) 동 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변경 등록의 경우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동 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 제1항 제6호 나목의 변경 등록 규정은 변경되는 장치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목적이 모호하고 변경 장치의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변경된 구동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동 법 제12조(무대시설 안전

진단 등)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 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적용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해설

- 변경등록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은 변경된 구동 무대기계·기구에 한정하고 안전 진단 기준은 등록 전 안전검사에 따르도록 함
- <u>동 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u> 변경등록 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정기안전검사결과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만 제출하도록 함

## IX. 안전진단기관

# 가.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등(시행규칙 제6조의4)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제6조의4(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4(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업무절차서 1부 ② 안전진단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안전진단기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또는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지체없이 공고하여야한다.

#### 1. 개정 취지

- (현황)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시험검사 지정제도의 신뢰성과 지정기 관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정책이 시행 중에 있음.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적합성 평가 국제표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업무는 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검사기관에 적용하는 ISO 17020을 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요구사항을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방안)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업무절차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담보하고자 함

### 2. 해설

### (1) 업무절차서 추가

- 지정신청 시 업무절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게 되면, 지정신청을 하는 해당 기관의 경우 미리 자신의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후적으로도 업무절차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해당 업무절차서를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기관 지정 시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절차서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도로 업무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한정할 필요는 없음

#### (2) 변경신청서 제출

○ 현재 안전진단기관 지정 규정에는 지정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음. 지정요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실효적 인 관리를 위해서는 변경사항의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새롭게 정하고 있음 ○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 후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정받은 내용에 대한 실효 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 나. 안전진단기관의 요건 개정(시행령 제10조의2 관련, 별표 1의3)

구	현 행	개 정 안
분	요 건	요 건
	중 10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 격자 5명(기술사 1명 포함), 전기 분야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격자 3명(기술사 1명 포함),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금속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좌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전자·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 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좌동)
기술 인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전자·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산 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좌동)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계・전 기・전자・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좌동)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기계 ・전기・전자・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 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좌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무대예술전문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 기계 : 무대기계 전문인 1급 자격자나. 전기 : 무대기계 전문인 1급 자격자무대조명 전문인 1급 자격자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_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 진단 장비	다음 각 호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1. 맨눈검사: ① 산업용 내시경 ②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2. 구동검사: ① 회전속도계 ② 절연저항계 ③ 전류계 ④ 전압계 ⑤ 소음계 ⑥ 온도계 ⑦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 ⑧ 차음파 두께측정기 ⑩ 조도계 ⑪ 콘크리트강도 측정기 ⑫ 철근부식측정기  3. 비파괴시험: ① 자분탐상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③ 초음파탐상시험기 ④ 전동계 ② 진동분석장비(FFT 분석기)  5. 구조해석: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다음 각 호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1. 맨눈검사: ① 산업용 내시경 ②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2. 구동검사: ① 회전속도계 ② 절연저항 계 ③ 전류계 ④ 전압계 ⑤ 소음계 ⑥ 온도계 ⑦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 ⑧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 ⑨ 조도계  3. 비파괴시험: ① 자분탐상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③ 초음파탐상시험기  4. 진동시험: ① 진동계 ② 진동분석장비 (FFT 분석기)
비고: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구조해석용 프로그 램과 그 사용 인력은 대학 또는 연구소와 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 ,

#### 1. 개정 취지

- (현황) 동 법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2항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지정요건의 기준은 위임입법의 취지에 따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합 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친 요건 강화는 현실적으로 안전진단 기관 지정의 진입장벽을 높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함
- (개선방안) 기술인력의 지정요건에서 제6호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무대예술전문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존의시행령 내용은 보유 장비의 범위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 장비의기술변화 및 검사시험 방법 등의 다양성 증대에 비추어 경직된 내용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세부 분류표는 향후 기술인력 자격요건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고 판단됨

## 2. 해설

#### (1) 기술인력을 위한 최소인원 설정

- 기술인력 중 각 세부 분야의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전체 10명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정하고, 그 세부 인원에 대하여는 기계 분야 자격자 3명, 전기 분야 2명 및 금속 분야 자격자 1명으로 최소 인원을 설정함
- 채용인력 10명 내에서 최소인원을 제하고 나머지 인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기 관의 재량을 부과하고자 함

#### (2) 기술인력 지정요건 제6호 신설

○ 기술인력의 지정요건에서 제6호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무대예술전문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존 내용의 인원 요건을 완화하여 안전진단지정기관 신청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음 ○ 침익적 내용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완화에 해당하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최소침해의 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취지의 바람직한 완화 방향으로 설명 가능하며, 자격자로 인 정 가능한 각 분야별 학문단위를 세분화함으로 명확성을 확대하였음

## (3) 안전진단장비 일부 내용 수정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검사·시험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으며, 각 검사· 시험별 적정한 필요 장비가 변화된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법률의 위임 범위의 한계 내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위임입법 의 한계 등을 준수하고 있음
- 기술인력 관련 논의 중에는 자격증과 학과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기술자격법과 고등교육법에 세부 분류를 따를 경우, 무 대시설의 기술 발전, 사용 환경 변화 등에 지정요건의 적용이 경직되어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현재 안전진단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인력이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민원도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함

## 다. 수수료의 인가(시행규칙 제8조)

제8조(수수료의 인가) ① 위원회 또는 안전	
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그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수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등을 인가하여야하며, 인가한 수수료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좌동)

#### 1. 취지

- (현황)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중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8조 (수수료의 인가) 제4항의 신설을 통하여 "④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받고 자 하는 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수수료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인가 수수료 준수의무 내용을 추가함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 (문제점)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수수료의 인가) 제4항의 신설을 통하여 인가 수수료 준수의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법체 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적정 수수료의 수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별도 의 인가절차를 수반하는 것은 동 법 제39조(수수료) 제1항에 따라 당연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은 인가된 내용을 기준으로 거래당사 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야 할 수밖에 없음. 수수료의 인가제도는 공적 사무 에 수반한 비용지급의 문제에 대하여 수수료의 적정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동 법 제39조(수수료)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주무부처 장관이 관련 수수료를 미리 인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인가된 수수료의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의 수수료 준수의무와 같은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바 없음. 수수료의 지급은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적거래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제37조 제2항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제정해야 할 사항임. 결국 이를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수수료 준수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며, 특정 기준의 가격 준수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시장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개선방안)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수수료의 인가)의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함

#### 2. 해설

- 현행 동 법 제39조(수수료)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가한 수 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수수료 지급 합의에 있어 참고 가능한 수준의 법적 의미 를 넘을 수 없음
-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인가절차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범위를 넘어 인가된 수수료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의 준수의무를 별도로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위임입법의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현재 2020. 6. 27.자 2000현마 642·2001현바12 결정)을 참고한다면, 이 사건은 법률에서 수수료지급의 한도를 명시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러한 판시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의 근거조차 없이 인가된 수수료의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위헌조항으로 판단 가능하며, 특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나아가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03. 12. 18 자 2002헌가2 결정)에서도 모금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할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고, 적어도 모금액의 상한이나 모금액 산정의 대강의 기준이라도 법률이 스스로 정하고서 행정입법에 위임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수수료 등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한은 결국 법률이 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는바,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경우 또한 법률의 근 거 없이 시행규칙이 수수료 지급 준수의무를 정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시 취지에 비추어 위헌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됨(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검토의견)